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47
----------	-------

발의연월일 : 2019. 2. 26.

발의자 : 윤준호 · 황주홍 · 최인호

김해영 · 박재호 · 전재수

김민기 · 김종회 · 김현권

신창현 · 김종민 · 박광온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선박·인명의 수색과 구조, 해적대응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협력 증진이 매우 중요함.

그런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해양경찰 기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개발도상국에 함정을 지원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도 지원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다수 있음.

국방협력과 국익 증진을 위해 전역 군함을 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는 군과 달리 해양경찰청 용도폐지 경비함정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저가로 매각하여 왔음.

용도폐지 경비함정 매각 취지가 국가 간 협력 및 우호증진임을 고려할 때, 해군 군함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용도폐지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2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다. 단, 대상국가 선정과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생략) <u>&lt;신 설&gt;</u>	제9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단, 대상국가 선정과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